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2
----------	-----

2018년 9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최기찬 의원(찬성자 12명)
- 나. 발의일자 : 2018년 8월 16일
- 다.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 라. 상정결과 :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 9월 5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최기찬 의원)

가. 제안이유

- 의료관광업(글로벌 헬스케어 서비스)은 세계 각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지속적이며 급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분야임
- 현재 서울시는 매년 「서울의료관광 활성화 계획(안)」을 통해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의 근거가 없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 및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여 그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의료관광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4조)
- 의료관광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안 제5조~9조)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안 제10조~12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정욱)

가. 제정 목적

- 동 조례안은 「서울의료관광 활성화 계획(안)」을 통해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사업의 장기적 전략 수립 및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위해 제안된 제정안임.

이는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여 그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조례안의 목적 또는 취지를 규정한 목적규정은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제1조(목적)에서 의료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제12호는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 조례안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3. 25.]

■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와 관광진흥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2.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 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동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의료관광활성화)에 따라 “의료관광”을 정의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정의하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정의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외국인환자를 시 소재 의료기관에 유치하고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를 유능한 의료진과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은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민·관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의료관광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기존의 1년 단위로 세워지던 사업계획보다 중장기 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4.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7조(협의회 회의 등), 제8조(협의회 위원 수당)은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과 기본계획 관련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협의회란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회, 심의회 등 명칭을 불문함.

동 조례안의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의료’분야 라는 특수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설치요건에 부합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협의회(위원회) 설치 전 일정기간(1년정도) 동안 자문단으로 구성·운영하고, 운영성과 등을 평가 후 신설 필요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 2017.8),

위원회 신설 검토시 민관협력담당관에 의뢰하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사항 및 자문단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협의회(위원회) 설치 절차는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에도 동일하므로 이후 민관협력담당관의 검토를 통해 설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 편성권을 가지고 있어 위원회 설치에 시장의 고유권한이나,

견제와 균형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시장은~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에 문제가 없음.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과 기본계획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체육국장과 시민건강국장으로 한다.

1. 의료관광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2. 의료관광 관련 홍보·마케팅 전문가

3. 국내 의료에의 영향 및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 대표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민원 야기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는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상품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협의회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 위원 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 제10조(의료관광 홍보·마케팅), 제11조(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운영)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명시한 것으로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임.

제9조제1호의 해외설명회 개최 등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에 관한 사업은 의료관광 해외 주요 도시의 현지 유치기관, 병원을 대상으로 서울의료기관 설명 및 비즈 상담회 개최를 통해 서울 의료관광 상품 개발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서울시는 '18년 5월에 러시아에서 개최하였으며 오는 9월 중국 심천에서 개최 예정임.

〈2018년 의료관광 해외 설명회 개최(안)〉

지역	러시아 하바롭스크	중국 심천
시기	'18년 5월	'18년 9월
방식	서울의료관광 단독 해외 설명회 개최	
대상	해외 현지 여행사, 에이전시 등 의료관광 업계 관계자	
참가	서울 의료협력기관 및 현지 관계자 약 100명	
프로그램	.현지 업계 대상 서울의료관광 프리젠테이션(PPT활용) .B2B 1:1 비즈니스 상담회(협력의료기관 ↔ 현지 여행업계 등) .네트워킹 간담회 및 현지 의료기관, 의료관광분야 우수기관 시찰 등	

제9조제2호의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운영 및 공항 픽업 서비스 운영 등 외국인 환자 편의지원에 관한 사업은 의료기관과 의료관광객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통해 서울의료관광 수용태세 제고 및 의료관광객 확대 유치를 도모할 수 있음. 현재 서울시는 10개 언어권 총 128명의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음.

〈코디네이터 현황〉

항목	인원	항목	인원	항목	인원
중국어	44명	러시아어	13명	태국어	4명
영어	23명	베트남어	5명	아랍어	3명
일어	17명	인도네시아어	4명	캄보디아어	1명
몽골어	14명	-	-	-	-

제10조의 의료관광 홍보·마케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마케팅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시는 해외설명회 개최, 해외 바이어 초청 팸투어 개최, 온라인 마케팅, 홈페이지 활성화 및 유지보수, 가이드북 제작 등으로 사업을 추진 중임.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설명회 개최 등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에 관한 사업
2.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운영 및 공항 픽업 서비스 운영 등 외국인 환자 편의지원에 관한 사업
3. 서울 의료관광 헬프데스크 운영 등 의료관광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
4.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관한 사업
6. 국내외 의료관광 사업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7. 의료서비스 국제인증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0조(의료관광 홍보·마케팅 등) ① 시장은 의료관광의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및 서울시의 우수한 의료기술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 할 수 있다.

제11조(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운영)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홍보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홍보에 적합한 인사를 시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기존의 “서울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계획”을 통해 수행해 온 사업들의 직접적인 추진 근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의료관광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본 조례안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호법」, 「관광진흥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등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의료관광의 활성화 및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이 시행되고 있는 바, 상위법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직접적으로 위임한 근거규정 등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례의 제정이 상위법에 저촉 또는 위배됨은 없음.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회(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 1년간 자문단을 먼저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협의회(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자문단의 운영 성과를 통해 민관협력담당관의 검토 이후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의료관광 분야의 1차적 수혜자는 각 의료기관이 될 것이므로 민간영역에 공적인 지원이 투입된 만큼 서울시 관광산업의 발전과도 궤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계획 및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향후 이러한 특화관광 각 분야별 세부계획을 세우는데 공통된 지침이 되는 통합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1〉 타 자치단체 의료관광 조례 제정 현황

타 자치단체 의료관광 조례 제정 현황

□ 광역자치단체(9개)

시·도	조례명	제정일	비고 (소관부서)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09.12.30	-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1.07.11	-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	2011.08.05	보건정책과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16.07.01	건강정책과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5.10.02	-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5.07.20	보건정책과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	2014.04.03	관광진흥과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6.01.07	보건의료과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3.07.26	보건건강위생과

□ 서울시 자치구(6개)

자치구	조례명	제정일	비고 (소관부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5.04.09	의약과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3.06.20	건강도시과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2.12.31	의약과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0.11.05	보건행정과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7.03.28	보건의료과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6.12.29	의료지원과

<붙임2> 서울의료관광 협력기관 명단

서울의료관광 협력기관 명단

No.	구분	기관명
병의원		
1	종합병원	(의)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2	종합병원	CM병원
3	상급종합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4	종합병원	강동경희대병원
5	상급종합병원	건국대학교병원
6	상급종합병원	경희의료원
7	병원	고도일병원
8	상급종합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9	병원	광동한방병원
10	병원	대항병원
11	종합병원	부민병원
12	상급종합병원	삼성서울병원
13	상급종합병원	서울대학교병원
14	상급종합병원	서울아산병원
15	종합병원	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
16	상급종합병원	세브란스병원
17	종합병원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18	상급종합병원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
19	종합병원	인제대학교부속 서울백병원
20	병원	자생한방병원
21	상급종합병원	중앙대학교병원
22	종합병원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23	상급종합병원	한양대학교병원
24	병원	365mc
25	병원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
26	병원	굿라이프치과 (구 뉴페이스치과병원)
27	병원	신촌다인치과병원(신촌)
28	병원	바로선병원
29	종합병원	세란병원
30	병원	에스플란트치과병원
31	병원	우리들병원
32	의원	(사)정해복지부설 한신메디피아의원
33	의원	4월 31일 성형외과
34	의원	BK성형외과
35	의원	J홍진주 성형외과
36	의원	JW정원성형외과의원
37	의원	강한피부과의원
38	의원	가름한성형외과의원
39	의원	글로벌 성형외과 의원
40	의원	드림성형외과
41	의원	리즈산부인과
42	의원	바노바기성형외과
43	의원	서울밝은세상안과의원
44	의원	아름다운나라피부과(명동점)
45	의원	아이웰성형외과의원
46	의원	압구정S&B안과
47	의원	압구정리더스피부과

48	의원	압구정서울 성형외과의원
49	의원	원진성형외과
50	의원	위즈앤미의원
51	의원	청담오라클 피부과성형외과의원
52	의원	청담유 성형외과& 피부과
53	의원	클린업피부과의원
54	의원	허쉬성형외과
55	의원	JK성형외과
56	의원	디에이성형외과
57	의원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58	의원	솜씨좋은산부인과 의원
59	의원	아름다운나라 피부과 강남본점
60	의원	예송이비인후과
61	의원	이문원한의원
유치기관		
1	유치업체	(주)메디컬코리아서비스
2	유치업체	EMS
3	유치업체	단스크주식회사
4	유치업체	더즌스타
5	유치업체	매드유니온
6	유치업체	메디에임
7	유치업체	서울의료관광협동조합
8	유치업체	이부커스 코리아
9	유치업체	(주)광고하자
10	유치업체	(주)나이스메디
11	유치업체	(주)메디서클
12	유치업체	(주)유에스여행
13	유치업체	(주)하나투어ITC
14	유치업체	코앤씨
15	유치업체	티키스카이투어
관광분야		
1	호텔	라마다 서울호텔 (선정릉역)
2	호텔	삼정호텔
3	호텔	(주)서울가든호텔
4	호텔	(주)서한사
5	호텔	(주)파르나스호텔
6	호텔	(주)호텔롯데
7	호텔	프레이저플레이스 남대문
8	호텔	프레이저플레이스 센트럴
9	쇼핑	HDC신라면세점(주)
10	쇼핑	SM면세점
11	쇼핑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갤러리아면세점 63
12	쇼핑	동화면세점
13	쇼핑	(주)호텔롯데롯데면세점
14	쇼핑	호텔신라 신라면세점
15	철도	공항철도 주식회사
16	전시, 체험, 공연	드림컬처주식회사
17	전시, 체험, 공연	삼성딜라이트
18	전시, 체험, 공연	주식회사 케이티
19	전시, 체험, 공연	(주)크리에이티브통-박살
20	전시, 체험, 공연	(주)터치스카이 / 팡쇼!팡팡크루즈
21	전시, 체험, 공연	트릭아이미술관
22	전시, 체험, 공연	페르소나(비밥)
23	전시, 체험, 공연	한국의 집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기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2
----------	-----

발의년월일 : 2018 년 8월 16일

발 의 자 : 최기찬 의원(1명)

찬 성 자 : 김정환, 이광성, 장상기,
문장길, 김경영, 오현정,
정진술, 이동현, 송정빈,
강대호, 김화숙, 박기재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의료관광업(글로벌 헬스케어 서비스)은 세계 각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지속적이며 급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분야임
- 현재 서울시는 매년 「서울의료관광 활성화 계획(안)」을 통해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의 근거가 없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 및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여 그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 가. 의료관광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4조)
- 나. 의료관광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안 제5조~9조)
- 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안 제10조~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외국인환자를 시 소재 의료기관에 유치하고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에

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를 유능한 의료진과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서울특별시(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4.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과 기본계획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체육국장과 시민건강국장으로 한다.

1. 의료관광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2. 의료관광 관련 홍보·마케팅 전문가
3. 국내 의료에의 영향 및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민원 야기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는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상품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 위원 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설명회 개최 등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에 관한 사업
2.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운영 및 공항 픽업 서비스 운영 등 외국인 환

자 편의지원에 관한 사업

3. 서울 의료관광 헬프데스크 운영 등 의료관광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
4.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관한 사업
6. 국내외 의료관광 사업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7. 의료서비스 국제인증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0조(의료관광 홍보·마케팅 등) ① 시장은 의료관광의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및 서울시의 우수한 의료기술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 할 수 있다.

제11조(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운영)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홍보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홍보에 적합한 인사를 시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에 출석,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제5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 제4호·제5호·제7호, 제11조(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운영)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동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2,450,000천원 (연평균 49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450,000천원(연평균 490,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 물가상승률 미반영
 -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등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제9조 제1호),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운영 및 외국인 환자 편의지원(제9조 제2호), 의료관광 헬프데스크 운영(제9조 제3호), 국내외 의료관광 사업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제9조 제6호)은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제9조 제8호)은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추상적 규정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 의료관광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운영(제5조)사업은 위촉직 위원 13명 대상 연4회 회의 개최 (정기회의 2회, 임시회의 2회) 기준 비용추계
 -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제9조 제4호) 사업은 3단계(기본, 심화, 역량) 교육과정 기준으로 각 단계별 100명 교육 실시에 대한 비용추계
 -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관한 사업(제9조 제5호)은 공모전 연1회 추진 및 수상작 10건 대상 홍보·마케팅 지원에 대한 비용추계
 - 의료서비스 국제인증에 관한 사업(제9조 제7호)은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인증(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컨설팅 지원기관(1개) 위탁비용 비용추계

- 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운영(제11조) 사업은 위촉식 연1회 추진 및 홍보대사 활동 실비 연5회 기준 비용추계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450,000천원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제5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전문인력 양성(제9조 제4호)	145,000	145,000	145,000	145,000	145,000	725,000
	의료관광 상품개발(제9조 제5호)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의료서비스 국제인증(제9조 제7호)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의료관광 홍보대사 운영(제11조)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소계(b)	490,000	490,000	490,000	490,000	490,000	2,450,000
□ 총 비용(b-a)		490,000	490,000	490,000	490,000	490,000	2,450,000

1) 협의회 설치 및 운영 ≙ 50,000천원

- 총비용 = 10,000천원 × 5(년) = 50,000천원

- 연간 회의수당 : 150천원(2시간 이상) × 13명(위촉직) × 4회 = 7,800천원
- 자료제작, 인쇄, 사무용품, 교통실비 등 : 550천원 × 4회 = 2,2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협의회 설치 및 운영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 협의회 위원 15명 중 위촉직 13명 회의수당 및 기타 회의비용 계산

※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및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참조

2)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 725,000천원

- 총비용 = 145,000천원 × 5(년) = 725,000천원

- 기본과정(언어) : 200천원 × 100명 × 2개월 = 40,000천원

- 심화과정(자격취득반) : 350천원 × 100명 × 2개월 = 70,000천원
- 역량강화(자격증 취득자) : 150천원 × 100명 × 1개월 = 15,000천원
- 만족도조사 : 20,000천원 × (1회) = 2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전문인력 양성	145,000	145,000	145,000	145,000	145,000	725,000

※ 서울관광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아카데미 과정 예산 등 참조

※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산업인력공단) 취득 관련 기준

3) 의료관광 상품개발 ≍ 1,500,000천원

- 총비용 = 300,000천원 × 5(년) = 1,500,000천원

- 의료관광 상품 공모전 추진: 100,000천원(행사비) × 1회 = 100,000천원
- 수상작 홍보 · 마케팅 지원 : 20,000천원 × 10건 = 20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의료관광 상품개발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 서울산업진흥원(SBA) '2018 서울어워드 우수상품', '우수사회적경제기업' 등 사업비 참조

4) 의료서비스 국제인증 ≍ 100,000천원

- 총비용 = 20,000천원 × 5(년) = 100,000천원

-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인증 컨설팅 위탁 : 20,000천원 × 1개 기관 = 2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의료서비스 국제인증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 대구광역시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인증 컨설팅(대구의료관광진흥원) 비용 참조

5) 의료관광 홍보대사 운영 ≍ 75,000천원

- 총비용 = 15,000천원 × 5(년) = 75,000천원

- 홍보대사 위촉식 : 5,000천원(행사비) × 1회 = 5,000천원
- 홍보대사 활동 실비지급 : 2,000천원(1인 평균) × 5(회) = 1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의료관광 홍보대사 운영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민소통담당관 '2017년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 계획, 참조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이은영

분석관(주무관) 장호진

☎ 02-2180-7934

e-mail : hwarang7@seoul.go.kr